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	----------------------

42페이지 (표 : 참고1)	<p>【참고 1】 주택의 규모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단 독 주 택</th> </tr> <tr> <td style="width: 30%; padding: 2px;">• 다중주택</td> <td style="padding: 2px;">•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 3개층 이하</td> </tr> <tr> <td style="padding: 2px;">• 다가구주택</td> <td style="padding: 2px;">•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td> </tr> </table>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 용도바다면적 산정시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삭제</p>	단 독 주 택		• 다중주택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 3개층 이하	• 다가구주택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단 독 주 택							
• 다중주택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 3개층 이하						
• 다가구주택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86페이지 (①~⑦내용 교체)	<p>1) 평가대상</p> <hr/> <p>1. 초고층 건축물</p> <hr/> <p>2. 건축물 한동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p> <hr/> <p>2) 평가절차</p> <p>①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hr/> <p>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p> <hr/> <p>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p> <hr/> <p>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p> <hr/> <p>②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신청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 <hr/> <p>3) 평가항목</p> <hr/> <p>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p> <hr/> <p>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p> <hr/> <p>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p> <hr/> <p>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p> <hr/> <p>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hr/> <p>4) 비용부담</p> <p>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평가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하게 한다.</p>
---------------------	---

87페이지 (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건축허가의 취소사유</th> </tr> </table> <p>1. 허가 후 1년[공장의 경우 3년(농지전용의제를 받은 경우 2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가능)</p> <hr/> <p>2.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p>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90페이지 (건축허가의 취소)	(2) 건축신고의 취소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은 취소된다.				
93페이지 (표)	(3) 제한방법 1.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단서]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 삭제 2. 제한목적을 상세히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히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히 할 것				
111페이지 (28번 정답)	28. 다				
120페이지 (표 : 제18조의2-시행령, 시행규칙 추가)	<p>제18조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p> <p>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p> <p>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2.3]</p> <p>시행규칙</p> <p>제18조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p> <p>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7.2.3.]</p>				
120페이지 (1 성실시공의무 등)	⑤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35페이지 (표)	<p>① 1년 이내의 업무정지</p> <table border="1" data-bbox="400 1895 1444 2085"> <thead> <tr> <th data-bbox="400 1895 707 1944">대상 건축물</th> <th data-bbox="707 1895 1444 1944">위 반 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0 1944 707 2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td> <td data-bbox="707 1944 1444 2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p style="text-align: center;">- 생략 -</p> </td> </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위 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p style="text-align: center;">- 생략 -</p>
대상 건축물	위 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p style="text-align: center;">- 생략 -</p>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135페이지 (표)	<p>②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p> <table border="1" data-bbox="400 286 1442 667"> <thead> <tr> <th data-bbox="400 286 636 331">대상 건축물</th> <th colspan="2" data-bbox="636 286 1442 331">위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0 331 636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td> <td data-bbox="636 331 1102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49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50조)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50조의2)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51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52조)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52조의3) </td> <td data-bbox="1102 331 1442 667"> <p>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하)도급금액의 10% 이상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p> </td> </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위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49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50조)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50조의2)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51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52조)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52조의3) 	<p>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하)도급금액의 10% 이상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p>
대상 건축물	위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49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50조)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50조의2)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51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52조)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52조의3) 	<p>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하)도급금액의 10% 이상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p>					
176페이지 (9번 문제)	<p>9.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기준 내용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p> <p>㉠ 집합건축물대장을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한다.</p>						
190페이지 (3 건축기준의 완화)	<p>② 공개공지 설치대상건축물(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상복합이 아닌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이 아니더라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경우 완화규정을 준용한다.</p>						
216페이지 (표)	<table border="1" data-bbox="400 1111 1442 1245"> <tbody> <tr> <td data-bbox="400 1111 683 1155">1. 연면적</td> <td data-bbox="683 1111 1442 1155">500m² 이상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td> </tr> <tr> <td data-bbox="400 1155 683 1200">2. 층 수</td> <td data-bbox="683 1155 1442 1200">2층 이상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td> </tr> <tr> <td data-bbox="400 1200 683 1245">3. 건축물의 높이</td> <td data-bbox="683 1200 1442 1245">13m 이상</td> </tr> </tbody> </table>	1. 연면적	500m ² 이상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	2. 층 수	2층 이상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	3. 건축물의 높이	13m 이상
1. 연면적	500m ² 이상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						
2. 층 수	2층 이상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						
3. 건축물의 높이	13m 이상						
229페이지 (1번 보기 2번 조건, 해설 4번 보기)	<p>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이 아닌 것은?</p> <p>㉠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p> <hr/> <p>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p> <p>[조건] _____</p> <p>㉠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p> <p>해설 2 구조안전의 확인대상 건축물 ② 층수 : 2층 이상</p> <hr/> <p>4.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p> <p>㉠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p>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236페이지 (표)	<p>2 복도의 폭</p> <table border="1" data-bbox="402 302 1444 609"> <thead> <tr> <th data-bbox="402 302 751 347">구 분</th> <th data-bbox="751 302 1227 347">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th> <th data-bbox="1227 302 1444 347">그 밖의 복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2 347 751 609">4. 공연장·집회장 관람장·전시장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u>유흥주점</u> 장례식장</td> <td data-bbox="751 347 1227 609">당해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복도의 폭 : • 500㎡ 미만 : 1.5m 이상 • 1,000㎡ 미만 : 1.8m 이상 • 1,000㎡ 이상 : 2.4m 이상</td> <td data-bbox="1227 347 1444 609"></td> </tr> </tbody> </table>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그 밖의 복도	4. 공연장·집회장 관람장·전시장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u>유흥주점</u> 장례식장	당해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복도의 폭 : • 500㎡ 미만 : 1.5m 이상 • 1,000㎡ 미만 : 1.8m 이상 • 1,000㎡ 이상 : 2.4m 이상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그 밖의 복도					
4. 공연장·집회장 관람장·전시장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u>유흥주점</u> 장례식장	당해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복도의 폭 : • 500㎡ 미만 : 1.5m 이상 • 1,000㎡ 미만 : 1.8m 이상 • 1,000㎡ 이상 : 2.4m 이상						
286페이지 (2번 문제, 정답)	<p>2. 건축물의 대수선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p> <p>㉠ 연면적 1,000㎡인 건축물 ㉡ 높이 9m인 3층 건축물 ㉢ 경간 10m인 건축물 삭제 ㉣ 높이 12m인 2층 건축물</p> <p>해설 높이 13m이상 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하다.</p> <p>2. 나</p>						
309페이지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6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						
313페이지 (표)	<p>(2)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p> <p>7.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경사로 등의 부분 삭제</p> <p>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p>						
314페이지 (표 : 시행령 추가) (본문 수정)	<p>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바닥면적</p> <p>(2)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 기준 지하층의 면적과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또는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내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포함)의 면적, 고층 건축물·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p>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315페이지 ([참고2] 추가)	<p>【참고 2】 용적을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p> <hr/> <p>1. 지하층 면적</p> <hr/> <p>2.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p> <hr/> <p>3. 고층 또는 준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면적</p> <hr/> <p>4.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p> <hr/> <p>5.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바닥면적</p> <hr/> <p>※ 비고 삭제</p>
347페이지 (12번 문제)	<p>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높이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p> <p>㉞ 반자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계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p>
409페이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허가</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모니터링 대상건축물 지정</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모니터링 보고서 제출</p> </div> <div style="flex: 1; 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 건축물 지정 •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시, 사용승인 후 일정기간마다 제출 •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div> <div style="flex: 0.2; text-align: center; padding-left: 10px;"> <p>삭제</p> </div> </div>
436페이지 (6번 문제 정답)	<p>6. 나</p>
437페이지 (9번 문제)	<p>㉞ 건폐율은 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p>
467페이지 (4번 문제, 해설)	<p>4.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p> <p>㉞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인 건축물</p> <hr/> <p>해설 4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층 이상 • 용도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p>삭제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p>
512페이지 (3번 문제, 정답)	<p>3.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p> <p>㉞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우선되어야 함.</p> <hr/> <p>3. 다</p>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518페이지 (표)	<table border="1"> <tr> <th>보전녹지지역</th> <th>생산녹지지역</th> <th>자연녹지지역</th> </tr> <tr> <td>다. 교정 및 군사시설</td> <td>차. 교정 및 군사시설</td> <td>타. 교정 및 군사시설</td> </tr> </table>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다.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교정 및 군사시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다.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교정 및 군사시설										
519페이지 (표)	<table border="1"> <tr> <th>지 역</th> <th>지역의 세분</th> <th>건폐율의 세분</th> </tr> <tr> <td rowspan="3">2. 관리지역</td> <td>보전관리지역</td> <td rowspan="2">20% 이하</td> </tr> <tr> <td>생산관리지역</td> </tr> <tr> <td>계획관리지역</td> <td>40%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조례로 기준 대비 125% 이내에서 완화 가능)</td> </tr> </table>	지 역	지역의 세분	건폐율의 세분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조례로 기준 대비 125% 이내에서 완화 가능)		삭제
지 역	지역의 세분	건폐율의 세분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조례로 기준 대비 125% 이내에서 완화 가능)										
564페이지 (3번 문제)	<p>3.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p> <p>㉠ 평행주차의 경우 경형주차구획의 크기는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이다.</p>											
615페이지 (본문, 핵심 PLUS)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9 846 949 1064"> 1. 건축사자격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징계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td> <td data-bbox="949 846 1444 1064"></td> </tr> <tr> <td data-bbox="379 1064 949 1193"> ■ 징계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 처분 사유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td> <td data-bbox="949 1064 1444 1193">추가</td> </tr> </table>			1. 건축사자격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징계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 징계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 처분 사유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추가					
1. 건축사자격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징계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 징계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 처분 사유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추가											
633페이지 (23번 문제)	<p>23. 건축사법에 관련된 기술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p> <p>㉠ 건축사사무소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653페이지	<p>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726페이지 (2번 문제, 해설)	<p>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p> </div> <p>해설 구조안전의 확인대상 건축물 ㉡ 층수 : 2층 이상</p>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764페이지 (3번 문제, 해설)	<p>3. 건축법령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p> <p>㉠ 건축물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hr/> <p>해설 석면조사결과 사본은 착공신고서와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p>
779페이지 (1번 문제)	<p>1.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p> </div>
799페이지 (22번 문제)	<p>22.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p> <p>㉢ 건폐율은 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p>